

등록금 분할납부 운영(안) 및 신청안내

1. 분할납부 신청방법

가. 분할 회수 : 2회, 3회, 4회 중 택 1

나. 분할납부 신청 불가항목: 입학금 및 기타납입금(의료상조회비, 학생회비)

다. 분할납부 신청기간

구분	신청기간	비고
신청	2018년 7월 24일(화) 10:00 ~ 2018년 8월 3일(금) 23:59	

라. 분할납부 등록기간

구분	등록기간	비고
1회 차	2018.07.30.(월)~08.03.(금)	-
2회 차	2018.09.03.(월)~09.07.(금)	시작일 09:00 ~
3회 차	2018.10.01.(월)~10.05.(금)	마감일 17:59
4회 차	2018.11.05.(월)~11.09.(금)	납부가능

마. 신청 및 변경 절차

카이스트 포털에서 신청기간 내 직접 분할납부 신청

- 카이스트 포털(<http://portal.kaist.ac.kr>) -> 학사시스템 -> 등록/장학 -> (새창) -> 등록 -> 분납신청 -> “납입금 분납신청/취소”(개인납부/기관납부 모두 가능)

바. 분할 등록금 고지서 출력

분할등록기간 중 카이스트 포털(<http://portal.kaist.ac.kr>) -> 학사시스템 -> 등록/장학-> (새창) -> 등록 -> 분납신청 -> “분납고지서 출력”

2. 분할납부 처리방법

가. 1회 차 분할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을 필한 것으로 간주

나. 분할납부 대상자가 1회 차 분할등록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면

분할납부 자격이 취소되며, 추가 등록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

다. 1회 차를 납부하고 2회 차 또는 3회 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

회 차 납부기간에 미납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

라. 총 2회 미납 시 관련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하며, 기 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

마. 1회 차 이상 분할납부한 등록자가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

1) 기 납부한 분할 등록금이 반환 대상 등록금보다 많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

2) 기 납부한 분할 등록금이 반환 대상 등록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납부하여야 함

바. 1회 차 이상 분할납부한 등록자가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반환 대상 등록금보다

납부해야 할 금액이 많은 경우 차액을 납부하여야함

사. 분할납부 최종등록 기한까지 분할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련 규정에 의하여

등록을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하며, 기 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

3. 기타

- 2019 봄학기부터 연차초과자는 분할납부 2회까지 신청 가능

- 2019 봄학기부터 분할납부 신청 후 미납할 경우, 차기 1학기 동안 분할납부 신청 제한

문의처 : 학적팀 042-350-2366

2018. 7. 18.

KAIST 교무처장